

[별지]

LAW OFFICE OF
YONG WHAN KIM

11TH FLOOR, HANJU GROUP BLDG.
101, HANHANGNO-3GA, YONGSAN-KU,
SEOUL, KOREA
TELEPHONE : 82-2-798-7161(FAX)
FACSIMILE : 82-2-798-0212
E-mail : ywhk@wchallion.net

韓國士 金 容 换 法律事務所
서울特別市 錦山區 錦江路296 101番地
(한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96 101号地)
전 话 : (02)798-7181(代)
傳 送 电 话 : (02)798-0212
E-mail : ywhk@wchallion.net

2000. 10. 9.

수 신 : 부천시장
참 조 : 청소시설사업본부
제 목 : 계약서 검토 요청

1. 귀시의 위 제목에 관련 요청서(문서번호 : 2000. 10. 7자 청소 67510-) 관련입니다.
2. 저희들은 귀사의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저희 의견을 송부하여 드립니다.
 - 1) 제1.2조
국문본의 「신용등급 최우량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과 「부천시에 제출하며」가 영문본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 2) 제2조
국문본상 현지 회사는 쓰레기 처리 시설의 건설 및 운영 회사인 반면, 영문본에는 "oversea"라는 단어가 carry out 또는 perform 대신 사용되어, 감히 내지 감독하는 회사로 번역되었습니다.
 - 3) 제3조
한글본 8째줄 「진입로」라고 표시된 반면, 영문본(12째줄 말미)은 「roads」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4) 제4.2조
가. 국문본상 「GBT가 이전 계약 또는 이전 계약 관련 보증계약의 주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라는 규정이 영문본에는 누락되어 있

으며

나. 국문본상 「부천시가 책임없는 사유로」가 영문본에는 「어떠한 사유로인지(on whatever reason)」으로 수정되어 있습니다.(다만, 위 수정된 문구는 규시에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5) 제6.1조

귀시의 제6.1조상 책임운 GBT가 인가동을 받는 것을 지원하는 것임에 반하여 영문본에는 그와 같은 인허가동을 받는 것이 귀시의 직접 책임인 것처럼 작성되어 있습니다.

6) 제9.2조

한글본 2제출을 「GBT」부터 말미까지의 문장은 제6.3조에 기재된 바와 동일하며, 이에 따라 영문본에서는 위 중첩된 문구가 제6.2조에서 생략되어 있습니다.

7) 제10.2조

한글본 3제출의 「그외에도 경기도는」부터 말미까지의 문구에 상당하는 영문본 문구(제10.2조 5제출, "Furthermore"부터 끝까지의 문구)의 한글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아가, 경기도는 서울시와 인천시를 포함하는 참여자체 단체로부터 일일 평균 1000톤의 음식물 배출량 반입 학약에 추가하여 매월 단위로 계산하여, 일일 평균 합계 1500톤을 초과하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반입 동의를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늦어도 본 계약 체결 60일 이내에 취득할 것을 공식적으로 학약한바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문구의 내용은 한글본의 그것과 큰 차이는 없으나, 위와 같은 영문본 표기가 경기도에게 수락 가능한지 여부 및 officially committed한 것인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officially committed한 것이 아니라면 귀시가 허위의 보증/학약 (false representation/warranties)한 것이 됩니다.)

8) 제11조

통계 규정과 관련하여 한글본은 한국의 통계법에 의하여 3인의 중재인에 의한 45일내 판정이 내려지는 단 1회의 통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다만 8제출 「그러한 통보가 있으면」부터 9제출 「처리되어

야 한다.」는 문구는 앞의 국내 중재 부분과 전혀 맞지 아니하는 문구
풀이며, 계약 제19조 준거법에 기재된 단서 부분도 제1심 절차만 갖
는다면 필요하지 아니한 부분입니다.

반면, 영문본은 한국 중재법에 따른 중재에 대하여 복복이 있거나, 중
재가 45일 이내에 판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국제상공회의소 중재 규
칙에 따른 중재 절차를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들은 GBT측의 그와 같은 2종적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이 매우 화소한 것임과 한글본에 국제 중재 관련 규정에 관한 부
분이 누락되어 있음 및 위와 같은 2종적 중재의 수탁 여부는 귀시가
판단할 사안이나, 저희들은 국내 중재 단지 외국 중재 단지간에 단심
(單審)의 중재를 선호한다는 의견을 2000. 6. 13.자 의견서 제11항에
서 의견드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시가 위와 같은 이중의 중재 절차를 수탁하였다(경기도
배치등 박사님은 귀시가 수탁하였다고 함) 영문본은 수탁하여도 무방
하며 대신 한글본에 일부 문구가 추가되어야 합니다.(추가 문구 내용
은 위 2000. 6. 13.자 의견서 제11항 참조)

(저희들의 견해는, 이건은 조달청의 구매계약과는 달리 GBT가 스스로
자금조달하여 수행하는 공사인바, 통상 외국과의 계약시 국내의 중재
보다는 외국에서의 중재를 규정하는 것이 다수의 관행입니다. 그런데
이건 규정은 위와 같은 조달청 구매 계약상 국내 중재 규정과 국제
계약상 관행적 규정을 조화시킨 것으로 판단되는바, 따라서 귀시가
궁정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9) 제14조

한글본 3째줄 「본 계약 규정 제1조 내지 제7조」 가 영문본에서는
「Sections 1 and 7」이라고 표기되어 「제1조와 제7조」로 기재되었
고, 「규정하는 보통 계약」이라는 문구 및 「본 계약 취지에도 부합되
는 국제 거래 조건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라는 문구가 누락
되어 있습니다.

10) 제23조

한글본 9째줄 「이러한 손해를」부터 12째줄 「손해도 포함한다」고 영

공장 건설중에도 환경관제법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위 문구의 삭제를 영문의견서에 추가하였고,

- 2) 2.항의 경우, 그와 같은 책임이 「보험에 의하여 부보된 범위내에서」라는 문구가 영문본에 추가된바, 이론상 보험은 GBT가 가입하는 것인데, 그 범위내에서만 변상 책임진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위 문구의 삭제를 영문의견서에 기재하였으며
 - 3) 3.항의 경우 영문본 문구에 의하여 「GBT의 공장 운영에 관한 손실」에 대하여 GBT가 변상한다는 매우 애매 모호한 내용이 되므로, 한글본 내용에 보다 합치되는 내용으로 영문의견서에 수정문구를 기입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저희 의견(영문의견서 내용 포함)에 이견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귀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변호사 김 용 (韓國士
司 律 師 院)

첨 부 : 영문수정의견서 1통

LAW OFFICE OF
YONG WHAN KIM
11TH FLOOR, KANIL GROUP BLDG.,
19, HANKANGNO-2KA YONGSAN-KU,
SEOUL, KOREA
TELEPHONE : 82-2-798-7181(FAX)
FACSIMILE : 82-2-798-0218
E-MAIL : vvwbyw@challian.net

金容煥 律师事务所
서울特別市 麻山區 漢江路2街 191番地
(韓一그룹 2동 191号)
전화 번호 : (02)798-7181(代)
팩시밀리 : (02)798-0218
E-mail : vvwbyw@challian.net

2000. 10. 11.

수신 : 부천시
참조 : 청소사업소
제목 : 계약서 영문본 수정 요청

1. 귀사의 위 제목전 관련(문서번호 : 청소 63510-21640; 2000. 10. 10.자) 관련입니다.
2. 저희들은 귀사의 요청에 따라 법정과 같은 영문본 수정 내용을 담은 영문서를 송부하여 드립니다.
3. 그런데 위 영문의견서 기재 내용은, 2000. 10. 9.자 저희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을 반영한바, 다만 :
 - 가. 제6.1조의 경우 영문본에서는 「국의 송금을 허용하거나 달리 GBT가 지정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그 수입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기재되어 한글본과 다릅니다. 그런데 「국의 송금」은 「외국인부 차축전법」에서 보장되어 있으므로 무방하나, 「그의의 적절한 활용」은 관계 법규에 의하는 것이고 귀사가 이를 보장 또는 허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한글본 기재와 같은 내용이 되도록 후자 부문의 삭제를 영문의견서에 포함시켰습니다.
 - 나. 한편 제10.2조는 경기도가 무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체약 체결식장에서 경기도측은 저희에게 이미 1,500본 이상의 깃은 쓰레기 배출을 학약 받은바 있다고 구두로 확인하였습니다.) 영문 의견서에서 는 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다. 제9.2조는 영문 문항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므로, 영문 의견서에서는 논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라. 제11조는 귀사의 의견대로 단심(單審)의 중재로 수정하였습니다.
 - 마. 한편 제23조의 경우 위 2000. 10. 9.자 의견서 기재의에도 :
 - 1) 1. 항의 경우 그 책임이 「공장 가동 개시일 당시 밀표 풍선」 환경 법의 위반시 변상 책임을 지는 취지로 영문본에 추가된바, 이론상

- 공장 건설중에도 환경관계법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위 문구의 삭제를 영문의견서에 추가하였고,
- 2) 2. 항의 경우, 그와 같은 책임이 「보험에 의하여 부보된 범위내에서」라는 문구가 영문본에 추가된바, 이론상 보험은 GBT가 가입하는 것인데, 그 범위내에서만 변상 책임진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위 문구의 삭제를 영문의견서에 기재하였으며
- 3) 3. 항의 경우 영문본 문구에 의하여 「GBT의 공장 운영에 관한 손실」에 대하여 GBT가 변상한다는 매우 애매 모호한 내용이 되므로, 한글본 내용에 보다 합치되는 내용으로 영문의견서에 수정문구를 기입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저희 의견(영문의견서 내용 포함)에 이견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변호사 김 용 / 金 勇


첨 부 : 영문수정의견서 1통

LAW OFFICE OF
YONG WHAN KIM

11TH FLOOR, HANIL GROUP BLDG.
191, HANKANGNO-1KA YOPOSAN-KY.
SEOUL, KOREA
TELEPHONE : 82-2-798-7181(FAX)
FACSIMILE : 82-2-798-0212
E-mail : ywhawkyw@chollian.net

柳頓士 金 容 煥 法律事務所

서울特別市 阳山區 案江路2號 191番地
(案江一洞 11號)
전 话 : (02)798-7181(代)
傳 送 机 : (02)798-0212
E-mail : ywhawkyw@chollian.net

October 11, 2000

Puchon City
1156, JoongDong, WonMi-Ku,
Buchon City, Gyunggi-Do,
Korea

Attn : Waste management office

Re : WASTE TREATMENT PLANT DEVELOPMENT AND MANAGEMENT
AGREEMENT (The "Agreement")

Dear Sirs

With respect to the above captioned matter, we hereby provide your City with our following recommendations for the purpose of revising the English version of the Agreement to coincide with the Korean version of the Agreement.

1. Section 1.2

It is recommended to insert "and submitting to the City", after the word of "obtaining" in line 5; and further the word "Plant" in the last line shall be revised to be read as "Plant, which bond shall be issued by an internationally reputable insurance company(or financing institution) having the highest rate of financial creditability".

2. Section 2

It is recommended that the word "oversee" in line 3 be revised to "carry out".

3. Section 3

It is recommended that the word "roads" in line 12 be revised to "entrance roads".

4. Section 4.2

It is recommended that immediately after the word "Agreement," in line 4, "or in the event GBT breaches any material provision of this Agreement or any supplementary agreement related to this Agreement," be added; and that "for whatever reason," in lines 5 and 6 shall be revised to "due to a reason not attributable to the fault of the City".

(We also note that "to" in line 19 and "city" in the last line are typo mistakes of "shall".

and "City" respectively.)

5. Section 6.1

We recommend to revise the words of "use its best efforts to obtain for GBT" in lines 1 and 2 to be read as "provide the best support for GBT to obtain". Further we recommend the deletion of "or otherwise utilize its revenues in any manner it deems appropriate" in lines 6, 7 and 8.

6. Section 11

It is recommended that the entirety of sentences starting with "if either party" in line 13 ending with "utilized" in line 23 shall be deleted ; and that "either" in line 23 shall be changed to "the" ; and that "or arbitrator" in line 24 shall be also deleted.

7. Section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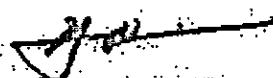
It is recommended to revise the words of "for purpose to implementing Sections 1 and 7 of this Agreement and in lines 5 and 6" to be read as "any supplementary agreements prescribing detailed terms and condition required to implement Section 1 to Section 7 inclusive of this Agreement; such documents required to comply with certain international terms and conditions which might be applicable to this Agreement; and such documents required".

8. Section 23

- A) It is recommended that "with respect to ;" in line 12 shall be revised to be read as follow :
"(the "Damages and Losses") with respect to following event or matter. The GBT's foregoing indemnification obligation shall be irrespective of whether or not GBT knew such Damages and Losses, whether or not such Damages and Losses were disclosed or whether or not such Damages and Losses are contingent ; and, further, such Damage and Losses shall include not only the direct damages but also indirect/special damages;"
- B) With respect to Subsection (a), it is recommended to delete "in effect upon the Commencement Date" in the last 2 lines.
- C) Further, with respect to Subsection (b), it is recommended that "to the extent of insurance coverage, any" in line 1 shall be revised to "Any" ;
- D) With respect to subsection (c), the entirety thereof shall be revised to be read as follow :
"Any law suits, either initiated or threatened, any settlement or any government order related to or arising from any waste under this Agreement or the GBT's plant operation and managements ; or"
- E) With respect to Subsection (d), it is recommended that the words starting with "costs" in line 1 and ending with "under the laws" in line 2 shall be revised to be read as "Any GBT's violation of" ; and that at the end of Subsection (d), "related to the waste under this Agreement or the GBT's plant operation and management," shall be added.

Should you have any question or comment on the foregoing, please feel free to reach us.

Sincerely Yours



Yong Whan Kim

LAW OFFICE OF
YONG WHAN KIM

11TH FLOOR, HANIL GROUP BLDG.,
191, HANMADRO-RI, YOUNGSAN-KU,
SEOUL, KOREA
TELEPHONE : 82-2-798-7181 (RDP.)
FAXSIMILE : 82-2-798-0212
E-mail : ywhlawkyu@chobien.net

韓國士 金 容 煥 法律事務所
서울特許市 順川區 朝鮮大路 191 號地
(韓一) 韓國 律師 11 樓
電 話 : (02)798-7181 (代)
傳 送 係 : (02)798-0212
E-mail : ywhlawkyu@chobien.net

2000. 10. 9.

수 신 : 부천시청
참 조 : 청소시설사업본부
제 목 : 계약서 검토 요청

1. 귀사의 위 제목과 관련 요청서(문서번호 : 2000. 10. 7.자 청소 67510-) 판
련입니다.

2. 저희들은 귀사의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저희 의견을 송부하여 드립
니다.

1) 제1.2조

국문본의 「신용등급 최우수」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과 「부천시에 제
출하며」가 영문본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2) 제2조

국문본상 현지 회사는 쓰레기 처리 시설의 건설 및 운영 회사인 반면,
영문본에는 "oversea"라는 단어가 carry out 또는 perform 대신
사용되어, 결국 내지 감독하는 회사로 번역되었습니다.

3) 제3조

한글본 8쪽줄 「진입로」라고 표시된 반면, 영문본(12쪽줄 말미)은
「roads」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4) 제4.2조

가. 국문본상 「GBT가 이전 계약 또는 이전 계약 관련 보증계약의 주
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라는 규정이 영문본에는 누락되어 있

으며;

나. 영문본상 「부천시가 책임없는 사유로」가 영문본에는 「어떠한 사유로던지(on whatever reason)」으로 수정되어 있습니다.(다만, 위 수정된 문구는 귀시에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5) 제6.1조

귀시의 제6.1조상 책임은 GBT가 인가등을 받는 것을 지원하는 것임에 반하여 영문본에는 그와 같은 인허가등을 받는 것이 귀시의 책임임인 것처럼 작성되어 있습니다.

6) 제9.2조

한글본 2제2증 「GBT」부터 말미까지의 문장은 제6.3조에 기재된 바와 동일하며, 이에 따라 영문본에서는 위 증정된 문구가 제6.2조에서 생략되어 있습니다.

7) 제10.2조

한글본 3제2증의 「그외에도 경기도는」부터 말미까지의 문구에 상당하는 영문본 문구(제10.2조·5제2증 "Furthermore"부터 끝까지의 문구)의 한글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아가, 경기도는 서울시와 인천시를 포함하는 항여 차지 단체로부터 일일 평균 1000톤의 음식을 배출한 반입 학약에 추가하여 매월 단위로 계산하여, 일일 평균 함께 1500톤을 초과하는 음식을 쓰레기 배출량 반입 등의를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늦어도 본 계약 체결 60일 이내에 취득할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바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문구의 내용은 한글본의 그것과 큰 차이는 없으나, 위와 같은 영문본 표기가 경기도에게 수락가능한지 여부 및 officially committed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officially committed한 것이 아니라면 귀시가 허위의 보증/학약(false representation/warranties)한 것이 됩니다.)

8) 제11조

증재 규정과 관련하여 한글본은 한국의 증재법에 의하여 3인의 증재인에 의한 45일내 확정이 내려지는 단 1회의 증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다만 8제2증 「그러한 통보가 있으면」부터 11제2증 「처리되어

야 한다」는 문구는 앞의 국내 충재 부분과 전혀 맞지 아니하는 문구 둘이며, 계약 제19조 준거법에 기재된 단서 부분도 제1심 철차만 갖는다면 필요하지 아니한 부분입니다.

반면, 영문본은 한국 중재법에 따른 충재에 대하여 풀복이 있거나, 통재가 45일 이내에 판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국제상공회의소 충재 규칙에 따른 충재 철차를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들은 CBT측의 그와 같은 2중적 충재에 의한 분쟁 해결이 매우 최소한 것임과 한글본에 국제 충재 관련 규정에 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음 및 위와 같은 2중적 충재의 수락 여부는 귀시가 판단할 사안이나, 저희들은 국내 충재 단지 외국 충재 단지간에 단심(單審)의 충재를 선호한다는 의견을 2000. 6. 13.자 의견서 제11항에 서 의견드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시가 위와 같은 이중의 충재 철차를 수락하였다면(경기도 배치동 박사님은 귀시가 수락하였다고 함) 영문본은 수락하여도 무방 하며 대신 한글본에 일부 문구가 추가되어야 합니다.(추가 문구 내용은 위 2000. 6. 13.자 의견서 제11항 참조)

(저희들의 견해는, 이건은 조달청의 구매계약과는 달리 CBT가 스스로 자금조달하여 수행하는 공사인바, 통상 외국과의 계약시 국내의 충재보다는 외국에서의 충재를 규정하는 것이 다수의 관행입니다. 그런데 이건 규정은 위와 같은 조달청 구매 계약상 국내 충재 규정과 국제 계약상 관행적 규정을 조화시킬 것으로 판단되는바, 따라서 귀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9) 제14조

한글본 3제6항 「본 계약 규정 제1조 내지 제7조」 가 영문본에서는 「Sections 1 and 7」이라고 표기되어 「제1조와 제7조」 후 기재되었고, 「규정하는 보충 계약」이라는 문구 및 「본 계약 위치에도 부합되는 국제 거래 조건을 자카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라는 문구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10) 제23조

한글본 9제6항 「이러한 손해금」부터 12제6항 「손해도 포함한다」고 영

문본에서는 누락되었으며 한글본 4호 규정 CBT의 원본에 원본인 한글본에
면 영문본 (d)호 규정은 「CBT의 처리 공정 운영에 관한 면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저희 의견에 대하여 귀사의 확인(특히 제11조 충재 규정)이 있는
경우 저희들이 영문으로 수정 제안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저희 의견에 이견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김 용



LAW OFFICE OF
YONG WHAN KIM

11TH FLOOR, HANIL GROUP BLDG.
63, HANKANGPO-2GA, YONGDAM-KU,
SEOUL, KOREA
TELEPHONE : 82-2-793-7181(FAX)
FAX(FAX) : 82-2-793-0212
E-mail : ywkyw@chollian.net

韩国士 金 容 焕 法律事務所

서울特别市 龍山區 滨江洞2街 191號
(韓一 그 둘 빙 강 21. 號)
전 话 : (02)793-7181(傳)
傳 送 电 : (02)793-0212
E-mail : ywkyw@chollian.net

2000. 9. 20.

수 신 : 부천시
참 조 : 경소사업소
제 목 : 부천시 계약(안)에 조항 삽입

1. 귀사 문서번호 창조 67510-1994(2000. 9. 18자) 관권입니다.
2. 귀사가 제안한 문구는 이전 계약 구조상 젖은 쓰레기 처리 시설의 폐내지 특성에 관한 것이므로, 계약(안) 제1.2항으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초안상 제1.2항 폐내지 제1.4항은 각각 제1.3항 폐내자·제1.5항으로 수정)
3. 위와 같이 제1.2항으로 추가되는 경우, 추가될 문구중 「일일 2,000톤 처리 규모로」는 초안 제1.1항과 중복되므로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이라는 문구는 계약 초안에서는 「젖은 쓰레기 처리 시설」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므로 그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한바, 이러한 점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구를 추가할 것을 의견드립니다.
「1.2 이 계약 제1.1항이 규정한 젖은 쓰레기 처리 시설은, 일일 2000톤 이상의 젖은 쓰레기외에, 하수 슬라지 할수 캐릭을 일일 600톤의 범위 내에서 적절의 상태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GBT는 부천시 하수정화 사업소에서 발생하는 하수 슬라지 할수 캐릭 전량 (일일 최대 600톤)을 젖은 쓰레기 처리 시설에서 무상으로 처리하여

야 한다.」

4. 위와 같은 저희 의견에 이견이나 외문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뉴시의 발전과 이전 Project의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변호사 : 김용



LAW OFFICE OF
YONG WHAN KIM

11TH FLOOR, HANUL GROUP BLDG.
631, HANJANGNO-2GA, YONGSAN-KU,
SEOUL, KOREA.
TELEPHONE : 82-2-798-7181(FAX)
FACSIMILE : 82-2-798-0942
E-mail : wjkwkyw@chollian.net

韓國士 金 慶 沎 律 師 術 所

서울特許市 龍山區 遠江路2號 191番地
(한국 특 험 법 11号)
전 話 : (02)798-7181(傳)
 fax 號 : (02)798-0942
E-mail : wjkwkyw@chollian.net

2000. 7. 29.

수 신 : 부천시

참 조 : 창소사업소

제 목 : GTB와의 WASTE TREATMENT PLANT DEVELOPMENT AND
MANAGEMENT 수상 조약(이하 "수상 조약") 관련 추가 의견

위 제목전화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저희 의견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아.

라.

1. 제1:2조

우선 귀사가 보낸 문구중 「발급하는」 다음에 「보증서류」 이 빠져 있는바,
위 문구의 추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이전과 같은 보증서(performance bond)는 그 성격상, 원본을 수혜
자(beneficiary)인 귀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행사되거나 또는 행사되지
나하고 기간이 경료되는 경우 GBT에 반환되는 것이므로, 「제출」이라는
용어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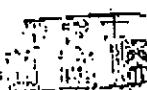
특히, 「제사」라는 용어는 보여만 주고 원본을 되가져 갈 수 있다는 의미
로 해석되는바, 만약 귀사가 원본을 갖지 아니한 경우 보증서 관련 원인
행사시 귀사에 불리한 문제(예 : 권리 포기 주장)를 일으킬 가능성이 큽습
니다.

2. 제4:2조

“원칙으로 하되, 이하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 것을 의견드립니다.”
 “원칙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은 철거 비용의 확보를 위하여, 참여자치단체
(제10.2조에 정의됨)가 부담하는 쓰레기 처리비에 한시적으로 그 비용을
 가산·징수하며, GBT는 위 징수된 비용을 부천시가 지정하는 부천시 명
 의 예금 구좌에 매월 이를 송금한다. 위 구좌에 예치된 금액(원리금)은
 위와 같은 폐쇄 및 철거사유 발생시에는 그 비용의 일부로 사용되며, 계
 약기간 원료사에는 부천시에 귀속된다. 위와 같은 가산 비용(쓰레기 분당
 미화 0.5불 이내) 및 기간(3년 이내)은 세부협약서에서 정한다.”

위와같은 저희 의견에 이견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 협의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김 용 훈



LAW OFFICE OF
YONG WHEAN KIM

3111 FLOOR, HANKANG GROUP BLDG.
191 HANKANGNO 2K, YONGBAN-KU,
SEOUL, KOREA
TELEPHONE : 82-2-798-7181(CRFT)
FAX/FAX : 82-2-798-9212
E-mail : ywlawky@chonilion.net

韓國土金客換律務事務所
서울特別市 韓光洞 2街 191號
(韓一) 韓光洞 11號
전 : 02) 798-7181(代)
 fax : 02) 798-9212
E-mail : ywlawky@chonilion.net

2000. 7. 18.

수신 : 부천시

참조 : 청소사업소

제목 : GTB와의 WASTE TREATMENT PLANT DEVELOPMENT AND
MANAGEMENT 수정 조안(이하 "수정 조안") 제1.2조에 대한 의견

위 제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저희 의견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 수정 조안 제4.2조(이전 처리 시설이 위 조항 기재 사유로 3년 이상 가동 중단시 GBT의 원상복구의무를 규정)와 관련하여, 저희들은 GBT가 수정조안 제1.2조에 따라 위치에 제공하는 이행보증서의 보증범위에 그와 같은 원상복구의무 이행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조안 제1.2조의 문구를 수정할 것을 의견드린바 있습니다.
- 그런데, GBT측은 미국의 금융 또는 보증기관으로부터 그와 같은 원상복구 의무 이행 관련 보증(또는 보험) 상품을 발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GBT 및 CH2MHILL이 연대하여 그 책임을 책임진다는 회사보증서(Corporate Guarantee)를 제출하겠다고 억제안하여 온 바, 위 양(兩) 회사의 현재 재정/자산 상태가 상당히 암호하다면 위와 같은 방법도 대안으로 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계약 기간 동안(완공시점부터 25년간) 위 회사들의

'재정상태가 계속 위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할 만큼 양호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그와같은 연대보증에 의한 방법이 결코 100% 귀시에 만족하다고 볼 수 없음도 사실입니다.

3. 그런데, 저희들이 살펴봐야 의하면, 제1.2조는 이전 PLANT의 건설 및 완공 의무에 대한 보증인바, 귀시의 부채사유 아닌 사유로 CBT의 이전 PLANT 완공이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 귀시는 이전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에게 이전 PLANT 건설을 맡기되 이를 인한 추가 비용을 또는 제3자를 발견할 수 없을 때 그 끝거에 필요한 비용을 그와같은 보증서의 행사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으로 보증하게 될 것입니다.(이러한 점은 보증계약서에서 명백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PLANT 완공된 이후 위와같은 제1.2조상의 보증서는 실효성이 있바, 이 경우 계약기간중 제4.2조에 규정된 상황이 발생하는 원상회복이라는 계약상 의무를 보증하는 새로운 계약이행보증서도 이론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실제 그와같은 보증서가 가능하지는 윤행 또는 보증회사(Surety Company)가 접할 문제입니다.

4. 만약, 귀시가 CBT가 CH2MHILL의 연대 보증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 현재의 여건상 귀시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별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다만 제4.2조 상황 발생시, 그와같은 연대보증에 추가하여, 귀시가 CBT가 완공한 공장 및 설비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과실(失實)을 귀시가 찾는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나 완공된 이전 PLANT가 기술상 이유로 가동불가하는 경우 위와같은 귀시의 처분권한은 귀시에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위와같은 저희 의견에 이견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김 용

LAW OFFICE OF
YONG WHAN KIM
10TH FLOOR, SANYI GROUP BLDG.
101, HANWAX 2-DONG, Yongsan-gu,
SEOUL, KOREA
TELEPHONE : 02-2-798-7181(FAX)
FACSIMILE : 02-2-798-0212
E-mail : ywhk@hanmail.net

한국 김 容 優 律 师 事 務 所
서울특별시 韓山區 源江路2號 101樓
(서울특별시 韓山區 源江路2號 101樓
전 话 : (02)798-7181(代)
傳 送 用 电 話 : (02)798-0212
E-mail : ywhk@hanmail.net

2000. 7. 7.

수 신 : 부천시

참 조 : 청소사업소

제 목 : CTB와의 WASTE TREATMENT PLANT DEVELOPMENT AND
MANAGEMENT 수정 초안(이하 "수정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

귀사가 회의한 위 제목과 관련하여 말씀과 같은 저희 법률 검토 의견서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건 계약 체결의 속박성을 감안하여, 귀사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최소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안들만을 의견드리는 것임을 부기
합니다.

법 务 事 業

첨 부 : 계약검토의견서 1종

수정 계약 초안 검토 의견서 (II)

1. 당사자 표시

가. 이건 초안상 당사자는 귀시 및 GBT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시는 이건 계약상 제반 의무를 귀시 단독으로 수행하여야 하든바, 경기도 또는 다른 지방 자치 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규정과 관련하여 귀시가 이를 얻지 못하는 경우 계약 위반(?) 될 것입니다.

나. 특히 계약 10.2조는 이건 처리 공장에 대하여 최소한 매일 평균 1,000 이상의 음식쓰레기 공급을 수도권 지역 지방 자치 단체들 (Participating Municipalities)이 협약하는 공식 문서를 경기도로부터 귀시가 제공받고 계약 체결후 60일 이내에 추가의 음식 쓰레기 공급 약속을 경기도가 귀시를 위하여 받겠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경기도로 부터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같이 협약서를 제공한 수도권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해 지방 자치 단체가 귀시 또는 경기도에 패제법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별관으로 하고, 귀시는 GBT에 대하여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반면 귀시가 고의같은 약속 불이행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하여 그러한 약속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취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위와 유사한 상황은 제5.1조의 쓰레기 처리비 지급 및 제10.3조의 사도(府道) 건설에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 따라서, 귀시가 통제할 수 없는 기관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하여 귀시가 계약 위반 및 이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만약, 어떠한 사유로 면지간에 경기도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귀시는 경기도로부터, 이건 계약상 경기도가 제공 또는 이행(?)

축·규정된 사항(자금 지원, 음식쓰레기 처리공장 건설 관련 행정 지원 및 위 음식쓰레기·발입 확약서 청구 등)을 제공할 것을 확약하는 일방 계속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예: 쓰레기 반입량의 지속적 이행)의 이행을 책임지는 일방, 그와같은 확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귀사가 입는 모든 손해를 경기도가 배상한다는 내용의 공식 문서를 정구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제1.2조

귀사는 "performance 또는 completion bond"가 국제적으로 신망있는 귀사가 수락 가능한 은행기관이 발행한 것이라는 점을 명시할 것을 원하고 있는바, 저희들도 위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3째줄 "for obtaining" 다음에 "from an internationally reputable bank acceptable to the City"의 추가를 의견드립니다.

3. 제4.2조

가. 수정 초안 규정에 의하면 CBT가 계약 체결 24개월 이내에 공장을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 귀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CBT가 그 건축된 부분의 철거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2000. 6. 13.자 의견서 6항 기재와 같은 수정이 바람직합니다.

나. 한편 귀사는 귀사의 규제사유외의 사유로 이전 Plant가 장기간(예: 3 또는 5년) 가동하지 아니하면, CBT는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든바, 그 경우 기간 및 사유등에 대한 당사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상당한 계약 체결의 자연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수정초안에는, 아미, 공장이 원래 designed된 것처럼 작동하지 않아거나 design된 목적(것은 음식쓰레기 처리)에 비효율적이면 철거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들에 의거하여 위와같은 장기간 유동 상태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귀사가 행할 수 있을 것으로 의견드립니다.

4. 제14조

2000. 6. 13.자 저희 의견서 1. 기재와 같이, 이전 계약은 「 자체적으로 모든 법적 사항이 완전하고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최종 계약이라기 보다는 Waste Treatment Plant 건설에 대한 기본적 사항만을 할의 및 규정한 것이라고 한 것이며 따라서 이전 계약 체결 후 상당한 숫자의 보증계약서(임대계약서, 부속 설비 구축계약서, 설비 기부채납 관련 계약서, 공장 규모 및 사양 관련 계약서등)를 체결하여야 하는바 위 6. 13.자 저희 의견서 기재와 같이 위와같은 보증계약의 체결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문구의 추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추가 규정

가. 귀시가 이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는 지방 재정법상 귀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인바, 만약 그 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전 계약 체결후 귀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실효한다는 규정 및 위 4항 기재와 같은 보증 계약등이 유효기간까지 체결되지 아니하면 이전 계약은 실효한다는 아래 규정의 추가가 바람직합니다.

「^{xx}조 (계약해지)

[경기도 및] 부천시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경기도 및] 부천시는 그와같은 해지에 따른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도 치지 아니한다.

- (1) 본 계약 이행에 필요한 [도의회 또는] 부천시 의회의 승인을 본 계약 체결후 일(1)개월 이내에 받지 못하는 경우 : 또는
- (2) 제14조 소정의 보증 계약들이 늦어도 _____가지(또는 계약 체결후 ___개월 이내에) 만족스럽게 체결 되지 않는 경우;

(영문으로는 "In the event the City, [and/or KyunggiDo] fail to

obtain the approval by its City Council [and/or Province Council] of this Agreement within one(1) month following the execution of this Agreement ; or in the event the Parties fail to enter into certain supplement contracts no later than _____ (또는 within _____ months following the as execution of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become no more effective and binding upon the Parties hereto. In case of such termination, the City (and Kyunggi-Do) shall be held liable to GBT on whatever account."

나. 한편 귀시에 대한 GBT의 변상책임 및 벌위를 명백히 규정한 Unisys 그
파의 계약서 초안 제28조(배상책임 ; Indemnification) 규정과 동일한
규정을 이전 계약에서도 추가하는 것이 귀시, 회원, 의회 의원들을 보
고하는데 절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 규정의 추가를 의견드립니다.

위와같은 저회.의견에 의견이나 의견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7월 7일

변호사 김 용

2000. 6. 13.

수 신 : 부천시

참 조 : 청소사업소

제 목 : GTB와의 WASTE TREATMENT PLANT DEVELOPMENT AND MANAGEMENT 초안(이하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

귀시가 의뢰한 위 계약과 관련하여 별첨과 같은 저희 법률 검토 의견서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 김용환

첨 부 : 계약검토의견서 1봉

전. 결	수수	2000. 6. 13.	2000. 6. 13.	2000. 6. 13.
접수일자	2000. 6. 13.	4814		
파도표	4814			
주				

계약 검토 의견서

저희들은 귀사가 제공하신 GTB와의 WASTE TREATMENT PLANT DEVELOPMENT AND MANAGEMENT 초안(이하 "초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이전 계약·초안에 내재된 기본적 구조는 지방 정부에 적용되는 예산회계법, 계약관련법 및 귀시의 조례상 허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저희들의 1999. 12. 16.자 의견서(이하 "제1차 의견서") 기재와 동일하게, 이에 대한 별도의 의견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의 성격에 대한 의견

이전 계약의 내용을 검토하건데, 그 형식이 비록 Unisyn과의 계약서와는 달리 binding이라는 문구는 없지만, Waste Treatment Plant(이하 "Plant")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당사자를 구속하는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계약은 그 계약만으로 Plant를 건설될 수 있는 성격의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계약이 되기에는 많은 면에서 부족한바, 예를 들어 Design, 건설, 운영 관련 세부사항, 귀사가 제공하는 각종 설비, 시설의 기부체납, 이행 보증증권의 발행기준 및 그 제출시점 등에 대하여 추가로 보충 계약을 맺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1차 의견 기재와 같이 각조항마다 최종적인 확정계약(내지 보충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다거나 또는 그 와같은 확정/보충 계약에 상세한 사항이 규정된다고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귀사가 설정한 바와같이, 이전 계약의 신속한 체결이 잠포 매립장과 관련하여 절실히 필요함에 비추어 그와같이 각조항별로 수정하는 것보다는 아래 12항 기재와 같이 특정기간 (예 : 2000년 x월 x일)까지 이전 각 규정을 구체화하는 확정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그때까지 위 계약들이 체결되지 아니하던 이전 계약은 손해배상 의무를 유발함이 없이, 실효한다고 규정하는 방안을 취하여 본 계약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일방, 귀사도 특정기간 경과후에는 본 계약에서 벗어나는 여유(exit

room)를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초안 제1.1조 및 제1.2조

제1.1조는 Plant의 규모가 매일 최소 2000톤의 처리능력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1.2조는 Plant 전립비중 5,000만톤을 GBT는 조달 책임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을 합하여 해석하는 경우, Plant의 매일 처리량 능력을 그 설립비용 5천만불에 기초하여 확정될 것 이므로 결국은 그 능력이 2,000톤으로 국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최소 2000톤"의에 "최대 _____ 톤"이라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귀시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영문 초안 3째줄 "at minimum 2,000 tons" 다음에 "and maximum _____ tons"를 추가할 것을 의견드립니다.

3. 초안 제1.3조

그와같은 부대 설비의 구축은 이루어져야 하지만, 관계법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한글본 제1.3조 첫째줄 「자기부담으로 부지에」를 「자기 부담으로, 당시의 관계 법규에 따라, 부지에」로 수정하며, 영문본 말미에 「, always in compliance with then prevailing pertinent laws and regulations」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4. 제3조

귀시가 제공하는 부지가 합계 6.62 acres인지, 또는 5 acre만 제공하고 그 중 1.62 acre에 공장을 세울수 있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공공시설 및 부수적 설비 시설과 관련하여, 제1차, 외경서 5.나. 기재와 같이, 세부사항이 규정되지 아니하였는바, 보충계약의 체결이 바람직 합니다. 그러나 위 1항 기재와 같이 해결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만큼, 그와같은 추가 규정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5. 제4.1조

Plant의 건설에 관한 time-schedule 등이 전혀 없는바, 따라서 이건 계약은

실제 Plant 전설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기한 계속 효력을 갖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도 제4.1조 말미에 「당사자들은 쓰레기 처리 시설이 늦어도 _____ 까지 상업적 가동을 개시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도임을 확인한다」를 추가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영문 초안의 경우 말미에 "The Parties confirm and acknowledge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to commence the commercial operation of the Waste Treatment Plant at the latest prior to or on,"을 추가하게 될 것입니다.)

6. 제4.2조

GBT에 의한 이전 계약 및 보충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받기 위하여, 한글본 초안 2개를 「못 미칠 경우에」를 「못 미치거나 또는 GBT가 이전 계약 또는 이전 계약 관련 보충 계약의 주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영문 초안 4개를 "this Agreement" 다음에 "or GBT violates material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or any other agreements supplementary to this Agreement,"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7. 제4.3조

Urisyn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개를 「처리 시설의 소유권을」 다음에 「쓰레기 처리 시설 가동 및 운영에 관한 노ウハウ(메뉴얼 포함)와 함께」를 추가할 것을 의견드립니다.

(영문 초안 2개중 "Plant" 다음에 ", together with the know-how(including manuals) required for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such Plant"가 추가됩니다.)

8. 제5.3조

초안에 기재된 내용의 수락여부는 당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다만 CPI의 경우 한국에서는 통계청만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만큼

6째줄의 "Consumer Price Index" 다음에 "published by the National Statistics Office of Korea"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Unisyn의 초안처럼 "Ministry of Labour of the U.S"가 대체되는 것도, 안정적인 Fee 구조의 유지를 위하여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9. 제6.1조

한글본은 「최대의 노력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영문본은 그러한 문구가 없습니다. 따라서 1학을 「shall provide」를 「shall exert best effort to provide」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10. 제10.1조, 제10.3조 및 제12조

규시가 이건 규정을 수락할 수 있는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11. 제11조

제1차로, 한국의 중재법에 따라 중재 판정을 받고 그 판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국제상공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의한다는 2중 구조는 매우 회피한 규정입니다. (한글본 해석중 「5일내에 선정한다」 다음에 「한국의 중재규정이 이 경우 적용된다. 만약 당사자 일방이 중재 규정에 불복하거나 또는 중재판정이 45일 이내에 결정되지 않는 경우, 그 당사자는 위 중재판정일 또는 45일 경과일 중 빠른날부터 15일중 내에 국제상공회의소에 국제상공회의소가 임명한 1인의 중재인에 의한 구속력있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같은 2중의 중재규정은 시간적으로 인쪽으로 너무 부글스러운 것이므로, 한글본 위 수정 문구를 「만약 당사자가」부터 초안 9째줄 「처리되어야 한다」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영문본 13째줄 "If either party"부터 23째줄 "utilized"까지를 삭제할 것을 의견드립니다.

12. 제14조

가. 위 1항에서 의견드린 바에 따르, 한글본 2째줄 「필요한 서류 및」 을

「필요한 서류, 본 계약 규정 제1조, 내지 제7조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보충 계약 및」을 추가할 것을 의견드립니다.(영문 문단 5개를 "Plant and"을 "Plant, such supplementary contracts setting forth the details required for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1 to Article 7 inclusive of this Agreement and"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 나. 한편 앞미에 "x년 x월 x일까지(또는 본 계약 체결후 _____개월까지) 위와같은 보충계약이 당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내용 및 형식을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어떠한 배상책임도 지지 아니한다."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영문으로는 "In the event the Parties fail to enter into foregoing supplement any contracts no later than _____, (또는 within _____ months following the execution of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not be no more effective and binding upon the Parties hereto. In case of such termination, neither party shall be held liable to the other party, on whatever account.")

13. 제19조

저희들은 「국제상공회의소의 원칙에 따라 적용되는 국제법」을 알지 못하며, 더구나 영문법에 의하면 그러한 국제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한 점에서 한글본의 「적용된다」는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글본 「다만」 이후 끝까지(영문본 "unless"이하 끝까지)는 삭제할 것을 의견드립니다.

위와같은 저희 의견에 이견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명.호.사. 길.용. 활

「국방 4.3 합과 관련에서 -」

GBT 사에서 25년간 사용한 후 부천시에 처리시설을 넘긴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플랜트 시설이라 할지라도 25년간 사용하면 사실상 그 플랜트 시설은 노
후되고 낙후되어 고용명어이나 다음없는 경우가 많을 것 입니다.

한일 처리시설을 인수 한 후 고장이 나거나 가끔이 없어서 작동이 중지 된거나 또는 노후화
로 인하여 처리 효율이 떨어져 사업상이나 경제성이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에도 위 회사에서 부천시에 처리시설을 넘기고 난 후에도 원정기간 이상 그 성능이 보장
되도록 유지 보수 하는 책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본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 가야 할뿐 아니라 보장되는 신뢰와 보장기간 등에 관
해 상세한 부속 합의서가 필요 합니다.)

기타 -

위 플랜트 시설이 어느 정도 안정성이 검증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처리시설 속동 후 세포를
구체물질이 생성 또는 배출 되는 경우 즉시 가동을 중단하고 그 처리시설을 상대방의 비용
부담으로 원거하고 공해물질 생성으로 인한 개인 손해배상등 일체의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
하는 내용의 조항이 추가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중개에 관하여 11 항에서 “--- 중개절차는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며 --- IOC 해
외에 스위스 제네바 또는 양측이 상호 합의한 제 3 의 장소에서 구속력 있는 중재가 처리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중재절차가 이루어 지는 장소 등에 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 입니다.

법률 의견서

1. 질의, 요지

귀시의 질의 요지는 저희들이 1999. 12. 16. 자로 의견드린 바 있는 WASTE MANAGEMENT AGREEMENT 초안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위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지 아니하고, 대신 경기도 경제투자 관리실장이 입회인, 참고인 또는 보증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계약 또는 계약 당사자(부천시 포함)에 미치는 효과 및 이에 대한 저희들의 대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2. 경기도가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의 법적 결과

가. 경기도가 이전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 규정된 각종 권리 및 의무는 계약 당사자인 귀시 및 Unisyn에게만 적용됩니다.

나. 따라서, 이전 계약 초안상 공장부지 제공 외부, 처리할 쓰레기 폐수량 공급 의무 등 귀시와의 지역(귀시 인근 경기도 지역외에 서울·인천 지역)으로부터의 쓰레기 반입, Unisyn에 대한 세제등 혜택 제공 의무 및 계약위반시 손해배상, 자금의무 등은 귀사가 전부 떠맡아야 하며, 위 의무에 대하여 경기도는 어떠한 책임도 진지 아니하므로, Unisyn이 경기도를 상대로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 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귀시의 경우 경기도가 계약 당사자가 되었다면 경기도에 대하여 계약상 경기도가 책임져야 할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경기도가 그와같은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결과 Unisyn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귀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귀시로서는 그와같은 계약해지로 인한 귀시의 손해 또는 Unisyn에 의하여 귀시가 청구 당하였거나 Unisyn에게 귀사가 지급한 손해에 대하여 경기도에게 이를 변상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지만, 위와같이 경기도가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와같은 권리갖지 못하게 됩니다.

나.

3. 경기도 경제투자 관리실장이 계약상 입회인, 참고인 또는 보증인으로 참여하는 경우의 법적 효과

가. 우선 경기도 경제투자 관리실장이 계약상 참여(기명/서명 및/또는 날인)하는 것이 개인자격인지 경기도를 대표하여 참여하는 것인지 명백하지 아니합니다.

즉, 경제투자 관리실장이 지방재정법 제7장(계약편)에 의하거나 개별적으로 도지사로부터 이전 계약과 관련하여 경기도를 대표할 것을 위임받고 참여하는 것인지 또는 경제투자 관리실장이 위와같은 자격 아닌 단순한 개인적 위치에서 참여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바, 후자(後者)의 경우에는 경기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반면, 전자의 경우라면 경기도의 직인이 이전 계약서상에 암울되어야 비로서 경기도를 구속하는 효력을 갖게될 것입니다.

나. 한편, 위와같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전 계약의 입회(영어로는 presence 또는 witnesseth) 또는 참고인 자격으로 경기도가 참여하는 경우, 위와같은 참여 방법은 이전 계약의 체결을 경기도로 알고 있다는 정도의 효력을 경기도에 미칠뿐 어떠한 경우에도 경기도에 대하여 법적/계약적 효력을 갖지 아니하는 것은 위 2항 기재의 경우와 다름이 없단다고 할 것입니다.

다. 다만, 경기도가 이전 계약 말미 또는 별도 서면형식으로 귀시에 의한 이전 계약 이행을 보증한다는 것을 학약하는 경우, Unisyn은, 궁극적으론, 귀시의 이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경기도에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 보증책임이 연대 보증 책임의 내용으로 작성되면 귀사의 배상책임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Unisyn은 경기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같이 경기도가 귀시의 계약의무를 보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코 Unisyn에 대한 책임일뿐, 계약 이행 자체는 귀사의 책임일뿐 아니라, 위와같이 경기도가 Unisyn에게 보증을 하는 경우에도, 경기도와 귀사가 별도로 채무 면제 약정을 하지 않는 한, 경기도는 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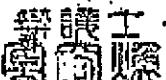
에게 보증채무의 구상권을 갖게 됩니다.

4. 의견

- 가. 저희들이 지금까지 첨료한바 있는 이건 계약 초안 기재 내용에 의하
면, 그 계약 내용의 성공적이고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는 경기도와 당
사자로서의 참여가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나. 만약,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경기도가 계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다
면, 그 대안은 아건 계약과 관련하여 귀시의 계약상 의무에 대한 보
증 형식으로 경기도가 참여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임 것인바, 이 경우
에도 위 3.가. 기재와 같이 협식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고, 가능
하다면 귀시와 경기도가 별도 약정을 맺어, 경기도가 이건 계약의 이
행과 관련하여 귀시와 똑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귀시에 그 의무 이행
을 위한 모든 지원을 다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
다. 만약 위와 같은 별도의 약정서 역시 가능하지 않다면 최소한도 경
기도가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귀사에게 구상권을 갖지
아니한다는 채무변제(내지 권리포기서)를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
다.

위와같은 저희 의견에 이견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4월 3일

변호사 김용 護士


법률 검토 의견서

저희들은 귀사가 제공하신 WASTE MANAGEMENT AGREEMENT 초안(이하 "초안")과 귀사의 검토 의견(이하 "검토의견")을 검토하고 문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이전 계약 초안에 내재된 기본적 구조는 지방 정부에 적용되는 예산회계법, 계약관련법 및 귀시의 초례상 허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의견은 드리지 아니합니다.)

1995. 2. 23

부천시장

1. 초안 전문(前文)

가. 귀사와 경기도가 전문에 기재된 내용을 수락한다면, 전문에 대하여 저희들은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Unisyn이 젖은 쓰레기 처리 공장의 건설 및 유자외에도 운영도 담당하므로 검토의견상 제약(안) (이하 "제약(안)") 전문내용 중 6제를의 「건설, 유지하며」는 「건설, 운 영 및 유지하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한편 위 계약(안) 마지막 구절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보다 정확한 해석은 「아래와 같은 조건의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한다」입니다. 그런데 「구속력」 여부에 관해서는 아래 2 항에서 논하는 바와 같은바, 만약 이전 계약을 차후의 확정계약들 (definitive agreements)의 체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수정한다면 「구속력 있는」이라는 문구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2. 초안제1조

가. 본 계약의 성격이 매우 혼동스럽습니다. 즉, 이전 쓰레기 처리 시설 건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세부 사안(공장설치 및 가동 개시 판 린 일정; 공장에서 사용한 공법과 사용, 공장의 규모; 이행보증서 금액 및 발행기관; 공장부지의 대여조건; 공장의 출거 요건 발생 사유 와 내용 및 그 첨거시 Unisyn의 책임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계약초안의 내용으로는 위와같은 차후의 세부사안에 대한 합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마치 공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계약이 체결되는 인상을 주고 있는 점이 매우 혼동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계약이 최종적인 성격이 아니라면 제1조 관련 내용중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를 「운영과 관련하여 당사자를 학역한 중요사안을 기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위 합의사안은 이전 계약 체결후 당사자간에 합의되는 추가계약(설치 일정/ 규모 관련 계약, 공장부지 대여 계약, 공장의 운영계약등)의 지침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일방, 아래 35항 기재와 같이 추가계약 체결에 관한 규정의 추가가 바람직합니다.

나. 귀사는 광장규모를 하루처리량 1,000톤 내지 2,000톤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인바, 이는 법률위적 사안이므로 의견을 드라지 아니합니다.

1999. 12. 23

부현서장

3. 제2조

가. Unisyn이 공장부지의 일차인 및 공장 설치 공사의 시행자가 되려면 한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초안안 제2조 1째 줄 「운영할 ... 설립한다.」는 「건설 및 운영할 회사(이하 "운영회사")를 한국내에 설립한다.」로 수정할 것을 의견드립니다.

나. 한편, 귀사의 설명에 의하면 귀사 및 경기도는 운영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제2조에 추가할 의견은 없습니다.

4. 제3조

말미에 「Unisyn(운영회사 포함)은 시 및/ 또는 도의 요청시 공장 완전 가동시까지 Unisyn과 운영회사의 계정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문구의 추가를 의견드립니다. 이와같은 문구 추가 목적은 아래 13.사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액 5,000만불의 계속적 유지가 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5. 제4조

- 가. 귀사의 접토의견 기재 내용은 도와 귀사가 협의할 사안이며, 건물이나 건조물이 없어야 한다는 Unisyn의 요구는 지나치거나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 나. 또한, 공공시설, 도로 또는 부수적 설비의 제공 요청 역시, 귀사와 도가 협의하여 그 수탁여부, 내자 수탁범위를 결정할 사안입니다. 다만 협안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에도 공공시설중 상하수도의 경우 공장 부지 내부의 관로 설치까지 의미하는지 또는 부지 경계시점까지 탄을 의미하는지와; 전기설비의 경우 공장내부의 배전반까지의 설치를 의미하는지 공장부지밖의 최단거리까지의 전주 또는 송전탑 설치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또로의 경우 그 폭과 설치 종점이 부지내 정문 예상지점까지인지 여부; 및 부수적 시설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초안대로 하면 귀사가 그 내용에 관계없이 전부 부담하여야 합니다. 물론 위와같은 내용을 이전 계약에 상술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차후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라면 제4조 1항에 「위 사안들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들은 본 계약 체결후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해결하는 확정(definitive)계약에서 규정된다.」를 추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 방안이 될 것입니다.

1993. 12. 21.
부천시장

6. 제5조

임대차 계약이 맺어지는 것을 정백히 하기 위하여 계약(안) 4제2호의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는 「협의하여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로 수정할 것을 의견드립니다.

7. 제6조

보통(脣頭) 구절과 관련하여, 건설뿐 아니라 운영, 보수/유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의 구입 및 설비의 운영자체도 Unisyn이 단독으로 책임진다고 하는 것이 보다 명확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안) 제6조 1제2호의 「필요한 장비의 도입 비용을」을 「제7.1조 기재 유효기간중 공장의 가동,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모든 장비의 도입 비용과 플랜트의 운영에 필요한 재반 비용을」로 수정할 것을 의견드립니다.

8. 제6.1조

가. 우선 계약(안)에 기재된 「2개 이상의」는 「1개의」를 잘못 번역한 것
아고, 「이행보증보험증서」는 「이행보증서」의 오역입니다.

나. 그런데 초안상에는 이행보증서의 제공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바, 계약(안) 2체를 「제공하여야 한다」 앞에 「플랜트 건설 개시전」 또
는 「선행조건 성취후 경기도/부천시가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할 것
을 의견드립니다. 한편 이행보증서(약정 PB)의 경우 그 발급기관이
신용있는 기관이 되어야 하며, 그 행사시의 불편함을 예방하기 위하
여 국내에 있는 은행(외국은행 포함)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
다. 따라서 계약(안) 제6.1조 1체를 「Unisyn은」을 「Unisyn은, 경기도
및 부천시가 수락할 수 있는 한국에 소재하는 금융·또는 보증기관이
발행하고, 경기도 및 부천시가 수락할 수 있는 내용과 형식을 갖춘」
으로 수정할 것을 의견드립니다.

1999. 12. 23
부천시장

또한 계약(안)은 「플랜트 건설 및 운영에 대한」이라고 규정하고 있
으나, 영문계약은 플랜트 건설만 언급하였을뿐 운영에 대하여는 언급
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영문 및 한글번역문에 「플랜트 건설 및 운영/
보수에 대한」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다. 또한 계약(안) 제6.1조 2체를 「사업기간동안」(영어로는 "during the
term of Project")는 사업(Project) 및 그 기간이 전혀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이는 제7.1조가 그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문구는
제7.1조에서 정의된 「기간동안」으로 수정되는 것이 상당합니다.

한편, 무엇이 철거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보증서의 금액등은 이전 계
약상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전 계약에 이를 상세히 논하는
것 보다는 제6.1조 말미에 「이해/완성보증서(금액포함) 및 쓰레기 처
리 플랜트의 철거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 계약 체결후 금사자들이 체
결하는 이에 대한 별도의 확정계약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다.」를 추가
하고, 이를 차후 논의하는 것이 쉽다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9. 제6.2조

귀시는 제6.2조가 Unisyn에게 관계 법규에 구애받지 없이 자유롭게 진출·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염려·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말미에 「단, 위와같은 건설은 관계
법규에 따르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를 추가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10. 제6.3조

Timetable 내지 time frame이 없으므로, 제14조에 열거된 선행조건들이
하나라도 만족되지 않는 한 플랜트 건설은 무기한 연장될 수 있음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11. 제7.1조

「완전가동」(full operation)의 의미가, 제8.1조에 규정된 800톤/일의 쓰
레기 반입 시점을 의미하는지, 이에 관계없이 플랜트의 시험가동을 거쳐
서 쓰레기가 정상적으로 반입되는 시점인지 또는 플랜트의 full capacity
(예: 2,000톤/일)가 충족되는 시점인지 여부가 명확치 아니합니다. 그런
데 제7.1조의 2개 문구는 가동개시일을 귀시에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
는바, 따라서 계약안 1개를 「플랜트 건설이 ... 시점으로부터」는 「가동
개시일부터」로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앞으로 가동개시일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과 그 예상 timetable은 차후 관련 확정계약
에서 논하여져야 할 것입니다.)

12. 제7.2조

가. 귀시의 계약(안)은 영문초안상 "donate"를 "기부처납"으로 번역한바,
영미법상 donation은 여러 가지 형태 및 조건이 부여될 수 있으므로
「조건 및 보상없이」(without any condition or consideration)라는
문구를 한글 및 영문본에 명시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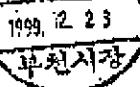
나. 한번 계약(안)은 영문 초안상 "entitlements"를 "사용권리"라고 해석한
바, 이는 양도하는 문건에 대한 소유권 내지 사용권을 의미하는 것일
뿐, 플랜트 운영에 관한 Technology(계약 제4조 참조) 및 know-how
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또한 「부담」이라는 용어는 「담보권」이라고

1991.12.23
부천시장

해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안) 2쪽을 「사용권리가 완전히 보장된 플랜트를」은 「당해 기부 재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 및 그 가동/보수/유지에 필요한 기술 및 노ウ하우의 무상사용이 보장된 상태에서 플랜트를」로 수정할 것을 의견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시는 「설비 성능이 완벽히 보장된」이라는 문구의 추가를 언급한바, 「완벽」이라는 의미의 보호성 때문에 Unisyn이 수탁할지 여부가 특히 의심되나, 일상·체의하는 것에 대하여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 다. 한편 계약(안) 3쪽을 끝은 「Unisyn에게 우선 협상권을 준다, 고 기개
- 판바, 「Unisyn에게 같은 조건이라면 우선적 권리다 준다」라고 해석
- 하는 것이 보다 영문 표현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우선
- 권의 부여 여부는 귀시 및 경기도가 기부재납후 운영과 관련하여 정
- 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13. 제7.3조

- 가. [60]일의 산정 기준일이 명백치 아니합니다. 따라서 계약(안) 제7.3조 2쪽줄 「의무들 [60일]이상 중대하게 불이행하는 경우」를 「의무를 중
대하게 위반하고 유반일로부터 [60]일동안 이를 시정하지 못하는 경
우」 또는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부천시 및 경기도 또는 관계 정
부 기관으로부터 그 시정을 서면 요구받고서도 [] 일 이내에 이를 시
정하지 않는 경우」로 수정할 것을 의견드립니다.

- 나. 또한, 제2항 기재와 같이 차후 수개의 확정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등,
계약의 위반 역시 해지 사유가 되어야 하므로, 계약(안) 제7.3조 첫줄
「본 계약 또는」은 「본 계약(제1조 소정의 차후 체결되는 추가계약 포함) 또는」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 다. 한편 「정당한 사유없이 Unisyn 및 운영 회사가 농장 전설 또는 그
운영을 [] 일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Unisyn이 제4조 소정의 재산/
체정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경기도 및 부천시는 본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라는 문구와 추가가 바람직합니다.

14. 제8.1조

- 가. 쓰레기 처리 비용은 Unisyn이 아닌 운영법원이 받는 것임을 명확히 하여야, 국제조세·문제(예: 원천징수등)가 발생하자 아니하며, 규시 및 경기도에 보다 편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안) 제8.1조 2째 줄 「Unisyn측에」는 「운영회사에」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 나. 한편 (2)항의 경우 그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물량 초과시 당해 시·군·반·이 해택을 보는지 또는 반입 비용이 입률적으로 조정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우선 3째 줄 「통당 처리비용」을 「통당 처리 비용의 하향조정을」로 수정하고, 말미에 「처리비용의 조정 기준 및 방법은 별도로 당사자들이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다. 또한 (3)항의 「2,000톤 미만」과 「2,000톤 초과」라는 문구로 안하여 「2,000톤인 경우」는 짜지는바, 따라서 제(3)항의 「2,000톤 미만」을 「2,000톤 이하」로 수정하거나 제(4)항의 「2,000톤 초과」를 「2,000톤 이상」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라. 또한, 제8.1조 관련 규시의 한서 추가와 「부천시」 삭제·의견에 대하여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10월 12일
부천시장

15. 제8.3조

- 가. 제8.1조 (1)항의 비추어 규시 의견과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 나. 한편 계약안 2째 줄 「환율에 변동이 있을 경우 1통에 1,200원의 환율이 조정된다.」라는 문구의 경우 그 조정단위가 월/분기/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제8.4조의 경우는 분기별입니다), 그 변동되는 환율이 매일 평균입지 또는 매월/매분기별 환율인지등이 명백하지 아니하고; 또한 적용되는 환율이 T/T, 배도/매수율, 현찰, 매도/매수율 및 기준율 등 어느것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바, 규사로서는 낮은 것일수록 유리하므로 「현찰 매수율」을 제1차적으로 제안할 수 있고, 제2차적으로 「T/T 매수율」을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따라서 계약(안) 2째 줄 「그에 따라 조정되어야」는 「당시 _____은행이 고시한 1개월 평균(또는 분기별 평균) 마화 현찰 매수율을 기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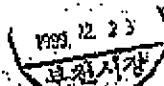
매월(또는 분기별)로 조정되어야 표 수정할 것을 의견드립니다.

26. 제8.4조

미국의 CPI가 보다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이를 선택하겠다는 귀시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그 선택은 공정한공후 60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서 문구 수정을 필요없을 것입니다.

27. 제8.5조

운영회사와 Unisyn 운영/관리 비용이 세법상 운영회사의 비용 항목으로 충당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며, 운영회사의 이익 계산 및 배당금 충당은 한국의 관계세법(한미간이증과세방지협정 포함) 및 외국관거래법/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시 의견에 동의하며, 이에따라 전문을 삭제하거나 또는 「플랜트 건설 이하」 문구의 삭제를 의견드립니다.



28. 제8.6조

제1차로 참여하는 지방정부들외에 다른 지방정부와 계약하여 운영회사가 상당한 배출을 올리는 경우, 그 배출 규모에 따라 제8.1조 규정과 비슷한 가격조정 방안도 고려 가능할 것입니다만, 초안 내용이 귀시에 최저가격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락하는 것이 귀시에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조정 방법과 관련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 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지를(예: 추가참여 시, 군에 적용되는 것보다 최소 5% 저렴) 계약에 명시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29. 제10.2조

귀시의 의견과 같습니다.

30. 제11조

가) 초안상 그 비밀자료의 범위가 매우 넓은바 경기도 또는 귀시로서는 어려한 것이 비밀자료인지 여부의 판단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11조 본문 7째 줄 「포함된다」 다음에, 「이러한 대외비 자료들은 Unisyn이 서면/유체를로 제공시 “대외비”라는 표시가 되어 있거나, 또는 Unisyn이 구두로 공개한 경우, 공개 후 3일 이내에 서면/유체를에 포함시켜 “대외비”라는 표시와 함께 경기도 및 부천시에 제공된다.」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 나. 또한 대외비 자료의 경우 아래와 같은 거의 표준화된 예비 구조를 허가함 추가 문구 다음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대외비 자료의 경우, 경기도와 부천시에 의한 공개와의 사용은 공지사설이 되었거나, 경기도 및 부천시가 Unisyn으로부터 제공받기 이전 이미 자체적으로 알고 있었거나, 경기도 및 부천시가 비밀 출수 의무가 없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자료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1. 제31.3조

- 가. 우선 (e)항의 1-2째 줄 문단(「대의 비밀 정보」부터 「보관되어야 하며」)는 (d)항과 중복되는 오타이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나. 또한, 판시 또는 경기도의 경우 치방 의회의 적법한 요구, 중앙정부(감사원 포함)의 적법한 요구, 관계 법률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면 이에 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인바,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f)항의 추가가 바람직합니다.
「(f) Unisyn은 경기도 및/또는 부천시가 경기도 또는 부천시 회의 적법한 요구 또는 중앙정부(감사원 포함)의 적법한 요구가 있거나 관계법에 의한 공개가 강제되거나 또는 법원등의 명령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Unisyn이 제공한 대외비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단 이러한 경우, 경기도 및/또는 부천시는 그와같은 공개로 인한 대외비 자료의 비밀성의 상실정도를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2. 제12조

말미에 「단, 계약제7.2조에 의한 기부채납시 플랜트의 운영, 가동,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자료(대외비 여부 불문)도 함께 암도되어야 하며, 부천시는 이를 영구히 무상으로 점유, 보관 및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를 추가할 것을 의견드립니다.

23. 제1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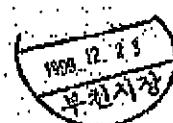
선행조건은 공장건축의 선행조건이 될뿐, 그 운영까지 선행조건이 적용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제14조 머릿줄 「건설하고 운영하여야 한」 은 「건설하여야 한」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24. 제14.2조

귀시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25. 제14.4조

귀시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26. 제14.6조

계약의 기간(영문 초안상 "Term")은 제7.1조에 가동개시후 25년이라고 이미 규정되어 있는것에 비추어 제14.6조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27. 제14.7조

계약이 체결되면 Unisyn은 당연히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의 책임 내지 의무를 지는바(제4조 참조), 제14.7조와 같은 내용이 선행조건으로 포함되면 Unisyn이 대출을 받지 못하면 팔렌트콤 건설/운영하는 것이 무한정 연기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규정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28. 제15조

가. 한국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이 유일한 규정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계약안 3계출 「따라서 중재를 신청한다」 는 「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배타적이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한편, 3째줄 「증재위원회는」 이하 7째줄 「5일 이내에 선정한다」는 저희 경험에 비추어 너무 축박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 문구를 「증재판부는 3인으로 구성되는바, 그 중재인의 선임 및 중재절차의 진행은 한국상사증재원의 증재규정에 따른다. 증재와 관련하여 Unisyn 은 대한민국 (주소)에 소재 거주하는 를

서류 송달 대리인으로 선임한다.」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8째줄 「변호사 수임료」 외 경우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라고 표기하는 것이 관행이며, 다행적한 것입니다.(제24조 말미 규정 참조).

라. 말미에 「증재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서 당사자들을 구속하며, 송소 당사자는 관할법원을 통하여 증재판정을 침행할 수 있다」라는 관행적 문구의 추가가 바람직합니다.

1993. 12. 23.
표현시정

29. 제17조

위 2가.항 기재와 같이 제1조에 추가하여 맷어점 계약 관련 문구가 추가되는 경우, 이전 규정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물론 제1조 대신 이전 규정을 위 2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0. 제19조

제3항의 3 영업일은 Unisyn이 해외에 있는 회사인 만큼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1주일 정도로 늘리는게 상당할 것입니다.

31. 제22조

첫문구(「본 계약서는」부터 「계약서이다」 까지의 문구)는 「본 계약은 그 목적에 부합하는 국제적 상용 문구를 포함하는 공식적 계약문서로 좀더 완전하게 규정된다.」의 오역인바, 위와같은 문구는 그 의미하는바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제17조 및 제18조와 충복되는 규정이므로 이는 삭제함이 상당합니다.

32. 제23조

「다만,」 이하의 경우, 제15조가 한국상사증재원만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더구나 위 29가항 기재와 같이 수정된다면 더욱 고려함) 전부 삭제되어야 합니다.

33. 제25조

제목을 「분리 및 전체계약」으로 수정하고, 말미에 「본 계약 체결 또는 발효시, 본 계약 체결 이전에 당사자간 이루어진 서면 모든 구두의 모든 교신, 양해, 약속, 합의는 효력을 상실하고 본 계약에 의하여 대체된다.」의 추가가 아름작합니다.

34. 제28조

가. 첫머리의 「Unisyn은」은 「Unisyn과 운영회사는, 연대 또는 단독으로」로 수정되든 것이 상당합니다.
 나. 규칙이 지적한 사항은, 제28조 마지막 2줄 규정에 회의록, Unisyn 주의 변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의견드립니다.

1993. 12. 23
부천시장

35. 제29조

이건 규정은 소위 Exit Strategy 규정인바, 2000. 3. 31.의 수락여부는 회사가 결정한 사안입니다. 다만 규칙 및 경기도도 그와같은 중간 활회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바, 따라서 아래와 같은 규정을 제29조 말미에 넣는 것이 상당합니다.

「경기도 및 부천시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경기도 및 부천시는 그와같은 해지에 따른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도지지 아니한다.」

- (1) 본 계약 이행에 필요한 도의회 또는 부천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 또는
- (2) 제1조(또는 제1조가 수정되지 아니하면 제17조 ; 위 29항 의견 참조) 소정의 계약들이 늦어도 까지 만족스럽게 체결되지 않는 경우.」

물론 위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계약 발효 규정으로 친설하는 방안도 고려 될 수 있습니다.

「제31조 (계약발효)」

본 계약은 아래 기재 사항들의 충족되는 경우 발효한다.

- (1) (위 (1)와 같으나, 끝부분을 「받을 것」으로 수정); 및
- (2) (위 (2)와 같으나, 끝부분을 「체결될 것」으로 수정)」

36. 제30조

1999. 12. 9자 Ernest Kim 변호사의 서신 및 관련하여 영미법상 제3자 계약에 대한 간접 이론에 의하는 경우 귀사가 Eric 한씨가 Unisyn의 배타적 대리인/대표자임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고 이를 배제하고 Unisyn과 계약한 경우 Unisyn과 연대하여 책임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가능성은 자극히 적습니다.

더구나, 한국법의 경우 위와같은 법이론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귀사가 반드시 대리인을 통하여야 하는 법적/계약적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귀사가 위와같은 경우 한씨에게 책임지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의 추가가 바람직하며, 이는 Unisyn측의 변호사의 1999. 12. 10자 서신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30.5 본 계약의 협상,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Unisyn의 대리인 또는 현지 대표자를 자칭하는 자로부터 경기도 및/또는 부천시가 물体质을 향거나(문제임 제거, 위험 포함) 제소당하는 경우, Unisyn은, 차기비용 및 책임으로, 경기도 및/또는 부천시를 위화같은 글로벌로부터 빼어 있으며 경기도 및/또는 부천시가 이로 인하여 입는 손해(소송비용과 합리적 변호사 비용)전부를 변상하여야 한다.」

위와같은 저희 의견에 이견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12월 16일

변호사: 김용환

변호사: 유춘복

서면질문답변서

○ 서면질문서 제출

- 2000년 12월 16일 한기천 의원 제출
- 2000년 12월 16일 시장에게 이송

○ 서면답변서 제출

- 2000년 12월 26일 시장 제출

한기천 의원

질 문 1

○ 법으로 규정하는 전문체육시설 중 부천시가 직접 시설하고 운영관리하고 있는 “전문체육시설의 종류”별 위치, 규모(대지, 연건평 등), 예산(대지, 건물, 시설별 가액 등), 연간수지분석(공무원관리 인력을 포함한 총지출 예산 대비 연간수입), 연간 시민이용 현황 [동호인 이용실태와 일반시민 이용현황(유료, 무료 구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 부천체육관

○ 위치 : 부천시 원미구 중4동 1024번지

○ 규모 : 지하 1층~지상 3층

• 대지면적 : 81,631m²(24,693평)

• 연면적 : 15,479m²(4,682평)

• 건축면적 : 6,209m²(1,878평)

• 조경면적 : 41,387m²(12,519평)

○ 사업비 : 19,791백만원

○ 연간수지분석(2000년도)

• 총지출 : 552백만원

• 연간수입 : 325백만원

○ 연간 시민이용 현황

• 동호인 이용실태 : 없음

• 일반시민 이용현황

— 총 이용인원 : 374,000명(유료 : 75,400명, 무료 : 298,600명)

질 문 2

○ 법으로 규정하는 “전문체육시설” 중 부천시가 직접 시설하고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는 “전문체육 시설의 종류”별 위치, 규모(대지, 연건평 등), 예산(대지, 건물, 시설별 가액 등), 연간수지분석(공무원관리 인력을 포함한 총지출 예산 대비 연간수입), 연간 시민이용 현황 [동호인 이용실태와 일반

시민 이용현황(유료, 무료 구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 해당없음

질 문 3

- 법으로 규정하는 "전문체육시설" 중 부천시가 직접 시설하지 못하고 순수 민간자본에 의하여 시설관리 되고 있는 "전문체육시설의 종류"별 위치, 규모(대지, 연건평 등), 예산(대지, 건물, 시설별 가액 등), 연간수지분석(공무원관리 인력을 포함한 총지출 예산 대비 연간수입), 연간 시민이용 현황 [동호인 이용실태와 일반시민 이용현황(유료, 무료 구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 해당없음

질 문 4

- 법으로 규정하는 "전문체육시설" 중 부천시가 직접 시설하지 못하고 순수 민간자본에 의하여 시설관리 되고 있는 "전문체육시설의 종류"별 부천시체육진흥을 위하여 지원한 예산과 행정적 육성지원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 해당없음

질 문 5

- 법으로 규정하는 "전문체육시설" 중 경기도 내 타시·군에는 있으나 부천시에는 없는 "전문체육시설의 종류"에 대하여 1종, 1개소 이상의 모든 시설에 대한 비교현황표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 경기도 체육시설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

• 참고자료 : 전국공공, 등록, 신고체육시설현황(2000년 문화관광부)

질 문 6

- 법으로 규정하는 "생활체육시설" 중 부천시가 직접 시설하고 운영관리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의 종류"별 위치, 규모(대지, 연건평 등), 예산(대지, 건물, 시설별 가액 등), 연간수지분석(공무원관리 인력을 포함한 총지출 예산 대비 연간수입), 연간 시민이용 현황 [동호인 이용실태와 일반시민 이용현황(유료, 무료 구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 생활체육시설은 총 86개소 145면이며, 내역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간보수내역

- 시민운동장 외 2개소 : 18,810천원
- 농구대 백보드 16개 교체 : 11,000천원
- 석촌공원 내 시설물보수 : 13,850천원

- 훈스보수(도당클럽, LG동네체육시설) : 2,650천원

※ 그 외 체육시설물 유지보수는 수시 출장하여 직접 보수

○ 시민운동장 연간수지분석

- 지출 : 11,909천원(전기요금 : 1,028,030원, 상하수도요금 : 1,694,760원, 정화조 : 1,000,000원, 유류 : 600,000원, 일용안부임 : 7,586,820원)

- 수입 : 7,883,960원

○ 시민이용현황

- 시민운동장의 축구장은 주로 조기축구회 동호회가 이용하며, 육상트랙은 육상선수의 워밍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관실적은 총 151회로서 대관료는 1인 2시간 기준으로 개인은 500원, 단체는 300원 사용료를 징수함
- 기타 체육시설은 무료로 이용함

□ 근린공원 및 공공부지 내 체육시설 현황

연 번	시설명	소재지	체육시설현황(개소/면)											
			계	농구장			배드민 턴장	축구장	야구장	배구장	족구장	테니스 장	로울러 스케이 트장	
				소계	농구장	길거리 농구대								
총 계			41/70	11/13	7/9	4/4 (10대)	6/21	5/5	2/2	4/6	2/2	8/16	2/4	1/1
1	덕유마을 옆 체육시설	원미구 중3동	4/4	2/2	1/1	1/1 (2대)		1/1				1/1		
2	LG 옆 체육 시설	원미구 1동	6/7	2/2	1/1	1/1 (6대)	1/2	1/1		1/1				1/1
3	시청사 체육시설	원미구 중1동	4/4	1/1		1/1 (1대)						1/1	2/2	
4	중부경찰서 체육시설	원미구 중2동	3/3										3/3	
5	제남공원 체육시설	원미구 중4동	1/1	1/1	1/1									
6	중동공원 체육시설	원미구 중1동	1/1	1/1	1/1									
7	석천공원 체육시설	원미구 상동	5/7	1/1	1/1		1/3	1/1	1/1			1/1		

8	소향공원 체육시설	원미구 중2동	1/2					1/2						
9	복사공원 체육시설	원미구 중2동	1/5									1/5		
10	길주공원 체육시설	원미구 중3동	3/3	2/2	1/1	1/1(1대)			1/1					
11	레포츠공원 체육시설	원미구 원미1동	5/15	1/3	1/3			1/5	1/1			1/1		1/5
12	도당공원 체육시설	원미구 도당동	3/9					1/5				1/2		1/2
13	중앙공원 체육시설	원미구 중1동	3/8					1/4				1/2		1/2
14	야구 연습장	원미구 준의동	1/1							1/1				

□ 어린이공원 체육시설현황

연 번	시 설 명	소 재 지	체 육 시 설 현 황(개소/면)								
			계	농 구 장			배드민 턴장	게이트 볼 장	로울러 스케이 트장	기 타	
				소계	농구장	길거리 농구대					
총 계			35/36	29/29	9/9	20/20 (22대)	3/4				
1	어린이1호 공원	원미구 중3동	1/1	1/1	1/1						
2	어린이2호 공원	원미구 중4동	1/1	1/1	1/1						
3	어린이3호 공원	원미구 중4동	1/1						1/1		
4	어린이4호 공원	원미구 중3동	1/1	1/1			1/1 (1대)				
5	어린이5호 공원	원미구 중3동	1/1	1/1	1/1						
6	어린이7호 공원	원미구 중3동	1/1	1/1			1/1 (1대)				
7	어린이8호 공원	원미구 중1동	1/1	1/1	1/1						
8	어린이10호 공원	원미구 중3동	1/1	1/1	1/1						

9	어린이14호 공원	원미구 중2동	1/1	1/1		1/1 (2대)			
10	어린이16호 공원	원미구 중2동	1/1						1/1
11	중동899 어린이공원	원미구 중동	1/1	1/1		1/1 (1대)			
12	심곡동302 어린이공원	원미구 심곡3동	1/1	1/1		1/1 (1대)			
13	원미동57 어린이공원	원미구 원미1동	1/1	1/1		1/1 (1대)			
14	심곡동344-9 어린이공원	원미구 심곡3동	1/1	1/1		1/1 (1대)			
15	도당동271-5 어린이공원	원미구 도당동	1/1	1/1		1/1 (1대)			
16	중동729 어린이공원	원미구 중동	1/1	1/1		1/1 (1대)			
17	중동737 어린이공원	원미구 중동	1/1	1/1		1/1 (1대)			
18	중동824 어린이공원	원미구 중동	1/1	1/1		1/1 (1대)			
19	역곡동53-11 어린이공원	원미구 역곡2동	2/2	1/1		1/1 (1대)	1/1		
20	역곡동22 어린이공원	원미구 역곡2동	1/1	1/1		1/1 (1대)			
21	역곡동115 어린이공원	원미구 역곡1동	1/1	1/1		1/1 (1대)			
22	도당동132 어린이공원	원미구 도당동	1/1					1/1	
23	소사본3동403-1 어린이공원	소사구 소사본3동	1/1	1/1		1/1 (1대)			
24	소사본3동401-4 어린이공원	소사구 소사본3동	1/1	1/1		1/1 (1대)			
25	심곡본1동818 어린이공원	소사구 심곡본1동	1/1	1/1		1/1 (1대)			
26	역곡3동124-2 어린이공원	소사구 역곡3동	1/2				1/2		
27	고강동 산96-5 어린이공원	오정구 고강1동	1/1				1/1		
28	원종동358 어린이공원	오정구 성곡동	1/1	1/1	1/1				
29	고강동389 어린이공원	오정구 고강본동	1/1	1/1	1/1				
30	내동60 어린이공원	오정구 신흥동	1/1	1/1	1/1				
31	성곡동344 어린이공원	오정구 성곡동	1/1	1/1		1/1 (2대)			
32	성곡동367 어린이공원	오정구 성곡동	1/1	1/1		1/1 (1대)			
33	성곡동383 어린이공원	오정구 성곡동	1/1	1/1		1/1 (1대)			
34	삼정동284 어린이공원	오정구 신흥동	1/1	1/1	1/1				

약수터 배드민턴장 현황

(개소/면)

연 번	시 설 명	소 재 지	배드민턴장
총 개			10/39
1	일심클럽	원미구 소사동	1/3
2	원미클럽	원미구 원미1동	1/4
3	도당클럽	원미구 도당동	1/5
4	금강, 사림클럽	원미구 역곡2동	1/5
5	동산클럽	소사구 피안동	1/4
6	신성클럽	소사구 송내1동	1/3
7	청심클럽	소사구 소사본1동	1/4
8	봉배클럽	소사구 소사본1동	1/4
9	여원클럽	오정구 성곡동	1/4
10	장수클럽	오정구 성곡동	1/3

 질 문 7

- 법으로 규정하는 "생활체육시설" 중 부천시가 직접 시설하고 운영관리 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의 종류"별 위치, 규모(대지, 연건평 등), 예산(대지, 건물, 시설별 가액 등), 연간수지분석(공무원관리 인력을 포함한 총지출 예산 대비 연간수입), 연간 시민이용 현황 [동호인 이용실태와 일반시민 이용현황(유료, 무료 구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 해당없음

 질 문 8

- 법으로 규정하는 "생활체육시설" 중 부천시가 직접 시설하고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의 종류"별 위치, 규모(대지, 연건평 등), 예산(대지, 건물, 시설별 가액 등), 연간수지분석(공무원관리 인력을 포함한 총지출 예산 대비 연간수입), 연간 시민이용 현황 [동호인 이용실태와 일반시민 이용현황(유료, 무료 구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 해당없음

□ 질 문 8

- 법으로 규정하는 “생활체육시설” 중 부천시가 직접 시설하지 못하고 순수 민간자본에 의하여 시설관리 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의 종류”별 위치, 규모(대지, 연건평 등), 예산(대지, 건물, 시설별 가액 등), 연간수지분석(공무원관리 인력을 포함한 총지출 예산 대비 연간수입), 연간 시민이용 현황 [동호인 이용실태와 일반시민 이용현황(유료, 무료 구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 문 9

- 법으로 규정하는 “생활체육시설” 중 부천시가 직접 시설하지 못하고 순수 민간자본에 의하여 시설관리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의 종류”별로 부천시체육진흥을 위하여 지원한 예산과 행정적 육성지원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 생활체육시설 중 순수 민간자본에 의하여 시설관리 중인 곳은 체육관 앞에 설치된 야외 아이스링크로서 시에서 지원한 예산은 없습니다.

□ 질 문 10

- 법으로 규정하는 “생활체육시설” 중 경기도 내 타시·군에는 있으나 부천시에는 없는 “생활체육시설의 종류”에 대하여 1종, 1개소 이상의 모든 시설에 대한 비교현황표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 별지 첨부의 생활체육 시·군 종목별연합회 결성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질 문 11

- 법으로 규정하는 “전문체육시설” 중 부천시가 직접 시설하고 운영관리하고 있는 “전문체육시설의 종류”별로 부천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연 1회 이상 단체로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과 시설이용현황(유료, 무료 구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 부천체육관

○ 위치 : 부천시 원미구 중4동 1024번지

○ 규모 : 지하 1층~지상 3층

• 대지면적 : 81,631m²(24,693평)

• 연면적 : 15,479m²(4,682평)

• 건축면적 : 6,209m²(1,878평)

• 조경면적 : 41,387m²(12,519평)

○ 사업비 : 19,791백만원

○ 연간수지분석(2000년도)

• 총지출 : 552백만원

• 연간수입 : 325백만원

○ 연간 시민이용 현황

- 동호인 이용실태 : 없음

- 일반시민 이용현황

- 총 이용인원 : 374,000명(유료 : 75,400명, 무료 : 298,600명)

□ 질문 12

- 법으로 규정하는 "생활체육시설" 중 부천시가 직접 시설하고 운영관리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의 종류"별로 부천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연 1회 이상 단체로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체육 시설과 시설이용현황(유료, 무료 구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부천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생활체육시설 종류로는 탁구 840명, 댄스스포츠 420명, 애어로빅 240명, 농구 420명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별지 무료·유료교실현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13

- 부천시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의 건강과 학습을 위하여 법으로 규정하는 "학교체육의 육성"에 대하여 부천시의 구체적인 육성, 지원방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우리 시에는 현재 종목별 학교 운동부가 총 89개 학교에 133개 운동부가 있으며, 학년별 육성현황은 초등학교 45개 교 71개, 중학교 24개 교 38개, 고등학교 20개 교 24개 운동부를 육성하고 2000년도에는 133운동부에 249,745천원을 지원하였음
 ○ 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종목수는 육상, 수영, 축구, 야구, 배구 등 27개 종목이며, 이 중 금년도에 상위 입상한 종목으로는 육상, 테니스, 축구, 럭비, 탁구, 레슬링, 싸이클, 핸드볼 등 17개 종목이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상위 입상을 하여 부천시 명예를 올린 바 있음
 ○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우수 지정 종목 중 레슬링, 육상, 검도종목은 부천시청 직장운동부와 축구는 부천 연고지인 부천 SK와 탁구, 테니스는 관내 실업팀이 없는 관계로 경기도 체육회와 협의하여 도내 실업팀을 연개하여 육성하도록 하겠으며,
 ○ 학교운동부 육성지원방침에 대하여는 첫째, 2000년 창단되는 팀에 대하여, 둘째 초·중·고교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장비구입 및 훈련비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한 지원은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하여, 고교는 해당학교에 직접 지원하고 있음
 ○ 이외의 육성지원방침에 대해서도 학교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천시 교육청과 부천시 체육회와 협의하여 부천시 학교 체육이 육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질문 14

- 시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여가체육의 육성"에 대하여 부천시의 구체적인 육성, 지원방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생활체육 발전을 통한 시민건강증진과 체력증진을 위해 추진방침을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생활체육대회(행사)를 통한 동호인 저변확대 및 생활체육진흥 도모로 정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시민 1인 1종목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9개 프로그램 사업, 각종 대회개최 및 출전 자체사업 18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참여인원은 150천명에 이르고 있으며, 구 주관으로 8개 종목 31개소에서 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이 원하는 여가체육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자체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추진하고 있음
- 생활체육 추진단체로는 부천시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으며, 산하단체로 24개 종목별연합회가 있으며, 동호인은 45,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질 문 15

- 부천시가 시설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중개인 또는 전문가 단체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실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 체육관 지하의 헬스장에 렌닝머신 외 24종, 에어로빅장에 무용바 외 6종 및 탁구대 10개와 농구대 4면을 부천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 질 문 16

- 부천시가 시설관리하고 있는 모든 “전문체육시설”에 대하여 종류별 위탁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실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 우리 시가 시설관리하고 있는 전문체육시설인 부천체육관에 대하여 2001년도부터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 질 문 17

- 부천시가 확보하고 있는 부동산(대지, 공원, 건축물 등)에 대하여 시민의 여가선용과 체육진흥을 도모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공원, 특히 체육공원에 민간기술과 민간자본이 직접 접목되어 시 예산 절감, 효율성 제고, 민간기술 및 자본 투자유치, 체육산업 육성,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체육시설 제공 등의 효과를 고려한 부천시의 방침과 시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 시민의 여가선용과 체육진흥을 도모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면 적정한 부지 확보가 필수적이나 체육시설이 열악한 기존시가지의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시에서는 기존 공원, 약수터 등에 설치가능 가능지를 적극개발 체육시설의 지역적 균형 발전 및 체육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 체육공원 내 민간기술과 민간자본이 접목되어 시 예산을 절감시키고 투자 효율성을 제고시켜 민간의 자본과 기술이 접목되고 동시에 공익성과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부천래포츠공원 내 여유부지 및 부대시설을 활용 민자유치개발사업을 통하여 건전한 체육, 문화, 오락, 휴식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수영장, 눈썰매장, 골프연습장, 놀이시설 등의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구상 중임

- 이러한 사업이 가시화되면 민간의 기술과 자본이 직접 접목되어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으며, 체육산업의 육성, 고용창출 지역경제활성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질문 18

- 부천체육관 여유부지에 인공아이스링크를 시설운영함을 모델로 부천시에 없거나 부족한 "여가, 생활, 전문체육시설" 중 많은 시민들이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가능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종목과 시설유치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부천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실외수영장 및 풀장, 눈썰매장 등 시설확충방안을 질문 21에 대한 민자유치방안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추진할 계획을 구상 중이며
- 실외 블러스케이트전용구장에 대하여는 부천종합운동장 외부 보행자전용 레크부분(연장 : 1.2km, 폭 : 10~20m)을 활용하여 시설하고자 하며,
- 또한 시청의회 앞 광장에 362평을 할애하여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인기가 있는 X-game 경기장(요기용 블러스케이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함

□ 질문 19

- 부천체육관 아이스링크 시설 운영에 따른 규모, 예산, 시민 이용도(유료, 무료 구분), 시 지원예산 등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부천체육관 야외 아이스링크 현황
 - 총 면적 : 1,889m²(571평)
 - 수용인원 : 약 500명
 - 사업비 : 약 550백만원
 - 사용기간 : 2000. 12. 1~2001. 2. 28(3개월 간)
 - 사용료 : 10백만원(공공요금별도)
 - 시민이용도 : 7,666명(11일 간)
- 시 지원예산은 없음

□ 질문 20

- 부천체육관 아이스링크 운영은 파리 시와 유사한 예산 약 6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설한 시설물에 대하여 춘, 하계에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학습, 여가, 생활, 전문체육"시설 유치 이용 방안(블러스케이트, 풀장 등)을 강구하여 계절을 극복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체육공원으로서의 활용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천시의 방침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우리 시에서는 부천체육관에 설치된 아이스링크의 시민이용도를 점검하여 이용도가 높을 경우에는 장소를 한정짓지 않고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의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시설할 계획입니다.

질 문 21

- 부천종합운동장(부천체육관) 여유부지에 대한 민자유치 활용방안에 대하여 부천시의 방침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 부천레포츠공원 내 여유부지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민자유치를 통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최대의 효율적 방안과 시민에게 건전한 체육, 문화, 오락 등 유희시설을 제공하고 자 거울철에는 눈썰매, 여름철에는 물썰매를 할 수 있는 사계절 썰매장과 1일 1,500여 명이 이용 할 수 있는 실외수영장 건립과 정원수식 등 각종 수석을 설치할 수 있는 전시장 또한 주차장 공간을 활용한 골프연습장 건립과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과 이상한 자전거 나라 등 건전한 체육, 유희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을 구상 중에 있음

질 문 22

- 부천체육관 여유부지, 도당산 균린공원, 부천종합운동장 체육공원 등 부천시 전체 시민이나, 구별 인근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외 수영장, 실외 풀장, 실외 휠러스케이트 전용구장, 눈썰매장 등 시민의 여가와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 부천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실외수영장 및 풀장, 눈썰매장 등 시설확충방안을 질문 21에 대한 민자유치 방안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추진할 계획을 구상 중이며,
- 실외 휠러스케이트 전용구장에 대하여는 부천종합운동장 외부 보행자전용 레크부분(연장 : 1.2km, 폭 : 10~20m)을 활용하여 시설하고자 하며,
- 또한 시청 의회 앞 광장에 363평을 할애하여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인기가 있는 X-game 경기장 (요기용 휠러스케이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함

생활체육 시·군 종목별연합회 결성현황

부천체육관 유료교실 인원현황

월별인원수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종목		229	903	771	850	803	1008	995	958	869	700	733	794	787	10,400명
헬스	월	92	448	349	454	136	491	475	531	416	297	332	367	283	4,930명
	일일	74	251	225	202	84	345	330	211	230	204	176	203	197	2,907명
탁구	월	19	43	19	26	8	21	21	31	27	16	32	23	43	338명
	일일	23	74	105	68	5	54	51	69	95	53	82	93	84	890명
에어 로빅	월	8	35	31	50	12	57	65	58	58	57	58	51	43	618명
	일일									2	32	6	7		47명
배드민턴		0	6	0	5										11명
리듬체조		1	7	13	14	9	18	15	9	17	11	21	21	10	173명
농구	월	8	22	9	13	6	4	3	22	3	8	4	7	42	157명
	일일			2											2명
요가	월	4	15	16	18	3	18	34	27	21	22	17	22	33	265명
	일일											5			5명
기공체조			2	2					1						5명
댄스스포츠													40		40명
체련교실													12		12명

부천체육관 무료교실 인원현황

종 목		월별인원수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계
합계		220	520	610	610	210		630	630	630		4,060명
배드민턴		30	30	30	30			50	50	50		270명
체련교실		30	30	30	30			30	30	30		210명
기공체조		30	30	30	30			30	30	30		210명
탁구	어린이			30	30	30		30	30	30		180명
	청소년		120	120	120	120		120	120	120		840명
	성인	30	30	30	30			30	30	30		210명
댄스 스포츠	어린이							30	30	30		90명
	청소년		70	70	70			70	70	70		420명
	성인	60	60	60	60			60	60	60		420명
차밍디스코		40	40	40	40			40	40	40		280명
에어로빅	어린이		30	30	30	30						90명
	청소년		40	40	40			40	40	40		240명
농구	어린이			30	30	30		30	30	30		180명
	청소년		70	70	70			70	70	70		420명

경기도